

# 이해상충 및 정보교류차단 방침

## ※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 및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의 종류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1	기업금융업무, 경영업무, 부수업무	- 법 제 174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고유재산운용업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경영업무, 부수업무	-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경영업무, 부수업무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다만, 2번과 3번 부문은 통합 운영 가능

##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에 대한 총액과 증권에 대한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 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 33 조의 2 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

1.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1 개월이 지난 정보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 ※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 거래제한 대상

1. 주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인수 관련 법인
2. 주권 및 주권관련사채권의 모집·사모·매출 주선업무 관련 법인
3.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관련 업무위탁 법인 및 상대 법인(다만, 인수·합병 규모가 해당 법인의 자산 총액 또는 발행 주식 총 수 의 5%초과인 경우에 한한다)
4. 지분의 매각 또는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관련 법인 및 상대 법인(지분매입 입찰 참여 의 향서 제출 법인 또는 해당 지분 발행 법인을 포함한다)
5.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이상 주식등을 보유한 법인
6. 법률 또는 계약으로 매매거래 등이 제한된 법인
7. 기타 거래제한 대상 목록에 준하는 이해관계를 보유한 법인

### 거래주의 대상

1. 전항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 위탁 의사 표시 또는 의뢰
2. 공개매수사무취급자 지정 법인 및 공개매수증권 발행 법인
3.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관련 업무 위탁 법인 및 상대 법인(다만, 인수·합병 규모가 해당 법인의 자산 총액 또는 발행 주식 총 수의 5%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4. 전항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 법인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영 제 201조제 1 항 각 호의 정보 및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5. 보증·배서·담보제공·채무인수 등 채무이행 직·간접 보장 법인
6. 채권채무 관계 법인
7.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5% 미만 주식등을 보유한 법인
8. 계열회사
9. 기타 거래주의 대상 목록에 준하는 이해관계를 보유한 법인

※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유형 및 대응방안

구분	상세 내용	시작일	종료일	상품 매매	임직원매매		조사 분석 자료 작성	선택/ 일임 편입	고지기한
					부서 본부	상사정보교류 허용 임직원			
거래 제한	101.인수·합 병	계약일 또는 의사결정일 중 빠른날	인수·합병 종료일	금지	금지	금지	금지	-	
	102. 상장주관 (IPO)		상장일 <sup>3)</sup>	금지	금지	금지	금지 <sup>1)/</sup> 고지 <sup>2)</sup>	금지	1) 시작일로부터 상장후 40 일간 2) 종료일로부터 1 년간 3) 주권의 인수(주권관련 사채권 포함) 시 청약비달로 살권주 인수 시 입고될 주식 또는 권리를 매도 하는 경우 상장일 2영업일 전일부 터 매도에 한해 가능
	103. 주권관련 사채권 인수		상장일 <sup>3)</sup>	금지	금지	금지	금지 <sup>1)/</sup> 고지 <sup>2)</sup>	금지	주) 지분매입 대상법인에 대하여 는 해당지분의 매입을 위하여 입 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
	104. 유상증자		상장일 <sup>3)</sup>	금지	금지	금지	고지 <sup>3)</sup>	금지	3) 시작일로부터 상장 후 40 일간
	105. 지분매각/ 매입	계약일 <sup>3)</sup>	공개입찰 종료일	금지	금지	금지	금지	-	주) 지분매입 대상법인에 대하여 는 해당지분의 매입을 위하여 입 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
	106.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한 매매제한 법인	계약일	계약 종료일	금지	금지	금지	-	-	

거래주의	201.매입약정	당사가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중개 매매 또는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에 편입이 제한됨	계약일	채무이행 보장종료일	금지	금지	금지	고지	금지	
	202.지급보증 (신용회피조항 없음)	당사와 매입약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직·간접으로 보증의 기능을 수행하기로 계약한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중개 매매 또는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에 편입이 제한됨	계약일	지급보증 종료일	금지	금지	금지	고지	금지	
	203.공개매수 관련 법인	당사를 공개매수사무취급자 지정한 법인(공개 매수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공개 매수 대상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해당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됨	계약일	공개매수 종료일	금지 <sup>주</sup>	금지	금지	고지	-	주) 공개매수 업무수행을 위한 특정 상품계좌에 한하여 요청을 받아 예외 계좌로 등록
	204.당사가 채권자 채무자인 법인	당사가 채권자·채무자로 참여 또는 관여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회사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및 해당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됨	계약일	채권·채무 관계종료일	금지	금지	금지	고지	고지	
	205.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라 당사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회사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됨	편입일	계열회사 제외일	금지	-	-	고지	동의	
	206.거래제한 대상업무 (101~106)를 위탁할 의사를 표시한 법인	거래제한(101~106) 업무와 관련하여 당사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한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해당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됨	위탁 의사 표시일	거래제한 업무 공개(공시)일	-	금지	금지	-	-	
	207.거래제한 대상업무 (101~106)와 관련하여 비밀 유지 약정을 체결한 법인	거래제한(101~106) 업무와 관련하여 당사와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한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해당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됨	계약일	거래제한 업무 공개(공시)일	-	금지	금지	-	-	
	208.발행주식 1% 이상 보유	당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해당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됨	1%이상	1% 미만	-	금지	금지	고지	-	
	209.증권시장 이전상장 지문 용역계약 체결한 법인	당사가 증권시장 이전상장 관련 주선·대리·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해당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됨	계약일	상장일	-	금지	금지	금지	-	
	210.업무집행 사원으로 운영 중인 PEF 에서 투자한 법인	당사가 업무집행사원(GP)의 지위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관전문투자자로부터 투자한 법인	계약일	매각일	금지	금지	금지	-	-	

조사 분석 자료 공표 등 금지	301.당사 발행 금융투자상품	당사가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조사분석자료 발간이 금지됨	발행일	만기일	-	-	-	금지	-	
	302.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법인	당사가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조사분석자료 발간이 금지됨	계약일	안정조작· 시장조작종 료일	-	금지	금지	금지	-	
	303.발행주식 5% 이상 보유	당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보유한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조사분석자료 발간이 금지됨 5% 이상 5% 미 만	5%이상	5%미만	-	금지	금지	고지	-	
	304.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 견거절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한정인 법인에 대해 조사 분석자료 발간이 금지됨	공시일	해소일	-	-	-	금지	-	
조사 분석 자료 공표 등 이 해관 계표 시	401.발행주식 1% 이상 보유	당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조사분석자료 발간 시 이해관계를 표 시해야 함	1%이상	1%미만	-	금지	금지	고지	-	
	402.코넥스 지 정지문인 계약 법인	당사가 코넥스시장 지정지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조사분석자료 발간 시 이해관계를 표 시해야 함	계약일	지정지문 계 약종료일	-	금지	금지	고지	-	
	403.주식, ETF,ELW 유 동성공급자	당사가 상장법인의 주권, 주식워런트증권(ELW), 상장지수펀드 (ETF)의 유동성공급자일 경우 해당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 및 해당 상장지수펀드(ETF)의 조사분석자료 발간 시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함	계약일	유동성공급 업무종료일	-	금지	-	고지	-	
	404.당사가 ELW 발행, ETF 설정/해 지 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	당사가 주식워런트증권(ELW) 발행자, 상장지수펀드(ETF) 설정/ 해지 업무담당자일 경우 해당 주식워런트증권(ELW)의 기초자산을 발행한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발간 시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함	계약일	해당 업무 종 료일	-	금지	-	고지	-	
	405.주식, ETF,ELW 유 동성공급자/발 행자	당사가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유동 성공급자/발행자일 경우 해당 상장지수펀드(ETF), 주식워런트증권 (ELW)의 기초자산을 발행한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발간 시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함	계약일	유동성공급 업무종료일	-	금지	-	고지	-	
	406.자사주 취 득/처분	당사와 자사주신탁(위탁 포함) 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 자상품에 대해 조사분석자료 발간 시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함	계약일	자사주 취득/처분 업 무종료일	-	금지	-	고지	-	
	407.기타 이해 관계 법인(직 접 입력)	그 밖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발생일	해소일	-	금지	-	고지	-	

## ※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규정
2. 정보교류차단 부문 설정
3. 상시적 정보교류차단 장치 운영
4. 정보교류통제 전담 조직 설치 및 운영
5. 이해상충 우려 거래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6. 임직원에게 대한 주기적 내부통제 교육 실시
7. 홈페이지에 정보교류차단 정책 공개
8. 이해상충 및 정보교류 적정성 여부의 주기적인 점검 실시